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이용)계약은 입소(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 이다.
- 3) 첨부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기준/전염성 여부)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는 관할구청의 이용의뢰서 1부,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 4) 이용보증금 - 이용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 5) 이용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6) 이용보호자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이용.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 7) 이용자원리 권리
 -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8) 월 이용료 (2022년)

등급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6,950	5,543
	2등급	34,210	5,132
	3등급	31,580	4,737
	4등급	30,140	4,521
	5등급	28,700	4,305
	인지지원등급	28,700	4,305
6시간 이상	1등급	49,530	7,430
	2등급	45,880	6,882
	3등급	42,350	6,353
	4등급	40,910	6,137
	5등급	39,450	5,918
	인지지원등급	39,450	5,918
8시간 이상	1등급	61,600	9,240
	2등급	57,070	8,561
	3등급	52,690	7,904
	4등급	51,250	7,688
	5등급	49,790	7,469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10시간 이상	1등급	67,870	10,181
	2등급	62,870	9,431
	3등급	58,080	8,712
	4등급	56,620	8,493
	5등급	55,180	8,277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13시간 초과	1등급	72,780	10,917
	2등급	67,420	10,113
	3등급	62,280	9,342
	4등급	60,840	9,126
	5등급	59,400	8,910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2022년)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9) 본인부담 및 비급여 (2022년)

구분	일반	감경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
본인부담률	15%	6%, 9%	0%	식사:4,000원(1회), 간식:2,000원(1일 2회)

10)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②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1)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당사자 간 사전합의가 있을 시는 합의된 내용에 의한다.)
- ⑥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 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⑦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⑧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⑨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2) 퇴소절차

- ① 시설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한다.
- ②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12) 이용료의 개정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